

## 2025년 제1차 한국발명진흥회 임시계약직 채용 공고

발명문화 확산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.

2025. 1. 24.

한국발명진흥회장

###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

응시코드	모집분야	부서	채용인원	담당업무
임시-01	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(대전)	대전지부	1명	•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운영·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

\* 모집분야별 세부 직무내용은 'NCS 기반 직무기술서' 참고

### 2 근무조건

고용형태	응시코드	모집분야	근무지	근무기간	보수수준(연봉)
임시 계약직	임시-01	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(대전)	대전	'25. 3. 4. ~ '25. 11. 17.	약 28백만원(세전)

\*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건으로,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

\* 주 40시간, 1일 8시간(9:00~18:00) 근무

###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#### 공통 지원자격

- 우리회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우리회 정년(만 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-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
## ○ 모집분야별 지원자격

응시코드	모집분야	지원자격	우대사항
임시-01	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(대전)	다음 중 <b>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</b> •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 •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*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•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*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• 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* 관련분야 : 채용예정직무 또는 지식재산 관련분야	-

## 4 가점사항

가점 항목	가점 요건	가점 수준
장애인	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*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증명서(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)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	전형별 만점의 중증 10%, 경증 5%
취업지원 대상자(보훈)*	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* 증명서 상 기재된 법정가산율에 따라 가점 적용	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

\* (보훈) 채용 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능

- 단,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인원 보다 적을 경우 가점 적용
- 동점자 발생 시에도 관련 법률 및 기관 내규에 따라 우선 선발

\*\* (상한) 전형별 가산점은 합산하여 가산하되, 그 가산비율의 합은 최고 10%를 초과하지 못함

## 5 채용절차

채용 단계	일 정	합격자 발표	선발 배수 (모집분야별)
원서 접수	1. 24.(금) ~ 2. 6.(목), 14일간	-	-
서류전형	-	2. 12.(수) 이내	3배수 내외
증빙서류 제출	~ 2. 13.(목) 까지	-	-
면접전형	2. 14.(금) ~ 2. 16.(일) * 시 역량면접(온라인) 실시	2. 21.(금) 이내	1배수 내외
결격사유 등 조회	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실시	-	-
입 사	3. 4.(화) 이후	-	-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별 세부사항은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

## 1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5. 1. 24.(금) ~ 2. 6.(목) 14:00 까지 (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
- 접수방법 :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  - \* **분야별 중복지원 불가(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)**, 우편·방문 접수 불가

### <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>

-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(교육, 자격, 경력 등)은 향후 증빙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, **입증이 불가능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도록 함**
- \*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, 누락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으며,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,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하게 편견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**개인 인적사항(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 등)의 직·간접적 기재를 금지**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감점·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(기관명 오기재, 동어 및 동일 문장 반복,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, 표절 등)의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

## 2 서류전형

- 평가기준 : 자격요건 확인 및 NCS 기반 자기소개서 정성평가
  - \* 직업기초능력 및 전문분야능력 평가
- 합격자 결정 : 응시 자격요건 충족자 및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, 가점 합산 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**3배수 내외 선발**

## 3 증빙서류 제출·검토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
  - \*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면접 응시 포기로 간주

## 4 면접전형

- 일정 : '25. 2. 14.(금) ~ 2. 16.(일) 23:59 까지
- 면접방법 : 온라인 AI 역량면접 실시
- 평가기준 : 인성 및 직무능력 종합 평가
  - \* 직무적합성·조직적합성·문제해결능력·대인관계능력·의사소통능력 등
- 합격자 결정 :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, 가점 합산 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**1배수 내외 선발**
  - \* 기한 내 검사 미완료자는 면접 응시 포기로 간주

**<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>**

- 최종면접 이전 단계 : 합격 커트라인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
- 최종면접 : ① 취업지원대상자 → ② 역량면접 고득점자 → ③ 필기전형 고득점자 → ④ 서류전형 고득점자 → ⑤ 지원서 접수 순서가 앞선 자

**< 예비합격제도 운영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>**

- 예비합격제도
  - 최종면접 이전 단계 :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과락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 순번을 자동 부여하며,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시에만 선발
  - 최종면접 : 과락자,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자를 제외하고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범위 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순번을 개별 안내하고,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또는 채용비위 발생 시 총원 가능
-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
  - 피해가 발생한 전형단계의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며, 채용 종료 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차기 동일 모집단위 채용 건에서 1회에 한하여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단계부터 채용시 기회를 부여함
  - \* 최종 면접단계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추가합격

**6 제출서류**

**<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>**

- 전형단계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, 자격미달 혹은 허위기재로 간주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모든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,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원칙으로 함
- 전형 단계 중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별, 학교명 등 민감 개인정보는 마스킹(블라인드) 처리 후 제출
- 제출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.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자에게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
- 전형 단계 중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가점 적용 확인 등 진위여부 점검을 목적으로 활용되며,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

전형단계	구 분	제출서류
서류전형 합격자	필수제출 (임시-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격요건 증빙서류</li> <li>- (해당자) 졸업증명서(대학원, 대학교, 전문학사, 고등학교 등)</li> <li>- (해당자)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</li> </ul>
	가점해당자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해당자) 장애인 증명서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</li> </ul>
최종 합격자	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</li> <li>• 주민등록등본</li> <li>• (남성)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</li> <li>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</li> <li>• 경력증명서*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</li> <li>* 직무분야 관련성 판단을 위해 담당업무 기재 필수</li> <li>* 단 폐업으로 인하여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확인서 제출</li> <li>* 해외경력의 경우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, 증빙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발급을 통해 공증해야 함</li> </ul>

- 본 계획(절차 및 일정)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([www.kipa.org](http://www.kipa.org))에 공고합니다.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회 인사·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, 이는 알리오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-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사지원서, 증빙자료 등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및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며, 입사한 경우라도 합격을 무효로 하고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최종 합격 이후라도 입사가 당연 취소됩니다.
- 청탁·압력·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 비위행위 적발 시, 부정합격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되며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신원조사 결과 우리회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우리회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관계인 제척 및 회피(기피) 제도를 운영합니다.
- 채용비리에 관한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가능하며, [첨부2] 양식을 작성 후 [apply@kipa.org](mailto:apply@kipa.org)로 제출 바랍니다.
  - \*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: 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, 2) 개인 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, 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, [첨부3] 양식을 작성 후 [apply@kipa.org](mailto:apply@kipa.org)로 제출 바랍니다.
  - \*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에」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
  - \* 반환 제외 : 온라인 제출 지원서,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, 홈페이지나 전자 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, 우리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
[첨부1] 한국발명진흥회 인사규정

제11조(채용결격 및 취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00.1.1., 2017.9.15., 2017.12.28., 2018.3.21., 2019.7.12., 2021.9.7.>

1.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
3.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
4. 채용 공고 시부터 최종 임용 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음이 밝혀진 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
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
6.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채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② 채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된 사실이 내부 또는 외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때에는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28., 2018.3.21., 2019.7.12.>